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내규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청소년수련관 체육시설 관리운영 규칙 일부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월 28일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규칙 제47호

청소년수련관 체육시설 관리운영 규칙 일부 개정

청소년수련관 체육시설 관리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5항의 내용 중 ‘수영, 헬스 등’을 삭제 한다.
‘제7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6항의 내용 중 ‘1일’을 ‘1일 1회’로 한다.

제6조 중 ‘회원가입을 하여야 하며 회원 가입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를 ‘재단 홈페이지 회원 가입을 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호, 제2호를 삭제 한다.

제22조 제1호 중 별지 ‘제8호 서식’을 ‘제4호 서식’으로 한다.

제5장 ‘안전근무 및 수질 관리기준’을 ‘안전위생관리’로 한다.

제27조~제30조를 삭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안전위생관리) ① 부서장은 사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 보호 장구의 구비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안전·위생 기준에 따른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부서장은 사용자가 제2항의 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체육 시설 이용을 거절하거나 중지하게 할 수 있다.

[별표 1] 프로그램 등록 중 ‘1. 온라인 등록 절차’ 를 ‘1. 온라인 등록 절차(추첨일 경우)’ 로 한다.

연번 2~6의 내용 중 ‘10:00’ 를 ‘11:00’ 로 한다.

연번 3에 ‘감면자는 관련증빙서류 지참 후 현장결제’ 를 추가하고, 기타사항 2번의 ‘토요일’ 을 삭제 한다.

[별표 1] 프로그램 등록 중 2. 현장 등록 절차의 대상에서 ‘화성시민 및 화성시 소재 직장인이 아닌 사람(타지역)’ 을 ‘화성시민 및 타지역’ 으로 한다.

[별표 5] 프로그램 사용요금 중 ‘1. 수영장’ , ‘3. 골프장’ , ‘4. 헬스장’ , ‘5. 스포츠과학 센터’ 를 삭제하고 ‘2. 생활체육’ 을 ‘1. 생활체육’ 으로 한다.

‘6. 빙상장’ 을 ‘2. 빙상장’ 으로 하고 ‘가. 빙상장 개인 및 단체 사용료의 월회원’ 중 ‘주 1회’ ‘성인은 50,000원’ , ‘청소년은 40,000원’ , ‘어린이는 35,000원’ 을 신설 한다.

‘다. 심화프로그램(집중, 고급 및 전문과정) 사용료’ 에 대한 표를 신설 한다.

[별표 7] 개인 사물함 사용 기준의 임대료(월 단위)의 기준 중 ‘대’ , ‘5,000’ , ‘소’ , 구분 배상의 ‘1. 개인사물함 열쇠 분실 : 5,000원’ , ‘2. 사물함 훼손 :원상복구(실비 변상)’ 을 삭제한다.

[별표 8] 대관 사용 신청 방법에 연번 1 중 ‘통합예약시스템’ 을 ‘재단 통합예약시스템’ 으로 하고, ‘나. 선수훈련을 위한 대관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의 준수 사항 중 ‘명단에 기재되지 않은 미확인 선수 출입이 적발될 시 대관을 제한한다’ , ‘대관 입장시 본인 확인을 위해 학생증 또는 등본을 지참하여야 한다.’ 를 신설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스포츠 프로그램 회원가입 신청서’ 를 ‘스포츠 프로그램 신청서’ 로 하고 그 이하 서식과,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에 대한 내용을 일체 정비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체육시설 사용수칙 중 7호의 내용 중 ‘수영, 빙상, 헬스, 골프, 일일 입장 등 포함’ 을 삭제 한다.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을 삭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내규심의위원회 의결을 얻은 후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